

자원봉사자의 재해 위험과 보호*

이 승 렬**

I. 머리말

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사례를 먼저 소개하기로 하자. 2010년 11월 어느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 센터가 운영하는 이동목욕차량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기사가 할머니를 태우고 승강기를 작동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차량 뒷문이 닫혀 스위치를 잡은 왼손이 끼이면서 엄지손가락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고를 당한 운전기사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산재가 인정되어 요양급여와 장해일시금이 지급되었다.

만일 다친 사람이 자원봉사자였다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자매관계에 있는 어느 회사의 근로자였다면, 회사의 근로자이긴 하나 개인적으로 찾아와 활동하던 자원봉사자였다면,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두 번째 사례인 회사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활동 중 재해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의 수급자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찾아온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면, 다른 어떤 경우는 봉사실적이 있어야 상해보험 혜택을 주기도 하고, 청소년은 아예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좋은 뜻으로 시작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이 수반하기라도 한다면, 이 부상이나 질병이 자원봉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심지어 일상생활의 유지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재해나 사고

* 이 글은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산업재해 실태와 보호 방안』(박찬임 외, 한국노동연구원, 근간) 제6장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yeesy@kli.re.kr).

에 대하여 정부는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하면 상해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지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 글은 뜻하지 않은 재해나 사고를 경험하는 자원봉사자를 어떠한 안전망(safety-net)이 보호하는지, 그리고 이 안전망의 기능에 빈틈이 있거나 않은지를 주제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 자원봉사자 활동 실태

1. 자원봉사활동 통계 개관

자원봉사자의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한국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박현정·홍현정(2011)에 따르면, 볼런티어 21이 3년 간격으로 조사하는 ‘전국자원봉사실태조사’, 2년 주기로 조사되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을 들 수 있다. 이들 통계를 통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보기로 한다.

〈표 1〉 자원봉사활동 통계

통계 명칭	작성기관	작성주기
전국자원봉사실태조사	볼런티어 21	3년
사회조사	통계청	2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5년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보건복지부	1년

자료 : 박현정·홍현정(2011).

2. 자원봉사 조직 현황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한 명으로도 가능하고, 단체나 정부가 주관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도 가능하므로 자원봉사조직은 다양하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는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행정조직과 같이 갈래를 쉽게 나눌 수도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다. 여기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조직은 제외하고, 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원봉사센터 현황

자원봉사자 수를 파악하기에 앞서 먼저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1) 자원봉사센터는 2012년 현재 24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05년과 비교할 때 4개소가 감소하였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2012년 현재 1,351명으로 이 가운데 민간인이 1,222명, 공무원이 129명이다. 이때 민간인은 모두 급여가 지급되는 인력이다.

〈표 2〉 연도별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2005~2012년)

(단위 : 개소)

	전체	직영	혼합직영	위탁	법인
2005	250		146	95	9
2006	248		151	83	14
2007	248		159	70	19
2008	248		158	74	16
2009	248		152	69	27
2010	246		151	68	27
2011	246	72	73	63	38
2012	246	67	76	55	48

자료 : 안전행정부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13).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8,216,176명이다. 그리고 활동인원은 2,163,174명으로 이는 2012년에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수이다. 연인원으로는 2012년의 경우에 18,652,383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해 본다면, 1인당 8.6회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참고로 2013년 9월 현재는 연인원 14,832,868명, 실인원 2,045,924명인 것으로 확인된다.2)

- 1) 참고로 자원봉사센터는 1995년 7월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1996년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지침을 지방정부에 시달함으로써 설치되기 시작하였다(김진학(2012), p.11). 2005년 8월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11690호)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근거를 둔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는 “지방정부의 자원봉사센터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와는 다른 공공성을 띠고 있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등록, 교육, 배치, 관리하는 등 전반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김진학(2012), p.11).
- 2)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웹사이트 참고
(<http://www.1365.go.kr/nanum/prtl/web/vols/sta/selectChartJuminSta.do?menuNo=P9210>).

〈표 3〉 연도별 자원봉사센터 근무인력 현황(2005~2012년)

(단위 : 명)

	근무인력		
	전체	공무원	민간인
2005	768	211	557
2006	784	203	581
2007	1,205	186	1,019
2008	1,253	215	1,038
2009	1,221	145	1,076
2010	1,291	171	1,120
2011	1,321	150	1,171
2012	1,351	129	1,222

자료 : 안전행정부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13).

〈표 4〉 연도별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단위 : 명)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5	2,083,704	900,214	1,183,490	461,728	280,234	291,274	495,536	345,960	208,972
2006	2,681,193	1,148,458	1,532,735	577,475	387,578	377,498	615,256	440,742	282,644
2007	3,279,911	1,436,642	1,846,269	731,312	491,402	491,573	717,813	501,151	346,660
2008	4,396,633	1,890,169	2,506,464	1,102,429	654,826	665,965	917,345	628,507	427,561
2009	5,363,435	2,290,367	3,073,068	1,392,766	884,771	717,047	1,075,208	763,458	530,185
2010	6,315,032	2,705,429	3,609,603	1,680,373	1,098,612	774,930	1,213,168	913,321	634,628
2011	7,085,162	3,034,133	4,051,029	2,007,734	1,245,759	832,933	1,319,685	984,805	694,246
2012	8,216,176	3,529,773	4,686,403	2,392,479	1,573,738	888,170	1,448,987	1,098,015	814,787

자료 : 안전행정부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13).

〈표 5〉 연도별 자원봉사자 활동 현황(연인원)

(단위 : 명, %)

	실인원 ¹⁾	연인원 ²⁾	참여율 ³⁾
2005	-	7,634,183	-
2006	-	10,314,903	-
2007	995,870	12,900,984	12.95
2008	1,426,956	14,020,872	9.83
2009	1,594,694	15,928,405	9.99
2010	2,051,412	14,979,864	7.30
2011	1,743,394	13,767,850	7.90
2012	2,163,174	18,652,383	8.62

주 : 1) 실인원은 연간 1회 이상 활동인원.

2) 연인원은 연간 총 활동인원.

3) 참여율=100×(연인원÷실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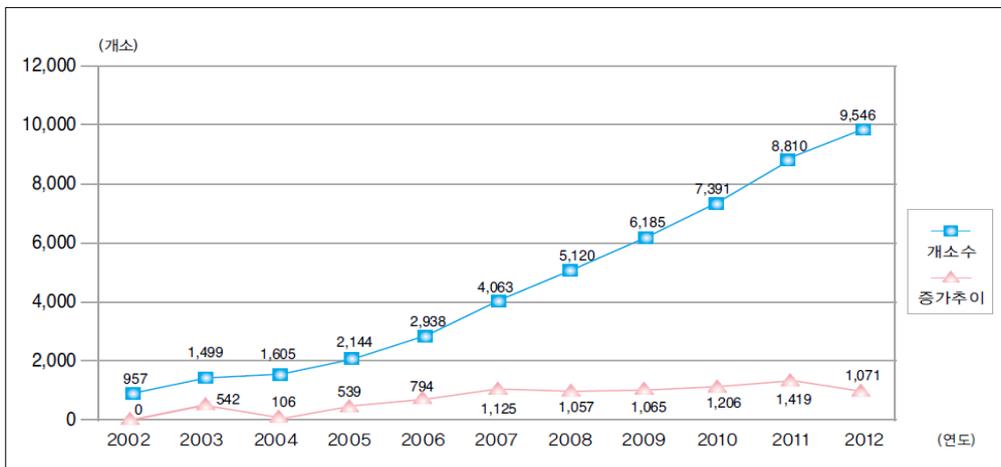
자료 : 안전행정부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13).

나.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현황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규정』(보건복지부)에 따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의 현황은 2012년 현재 9,546개소이다. 등록자원봉사자는 5,443천 명이고, 활동자원봉사자는 1,353천 명이다.

〔그림 1〕 연도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추이(2002~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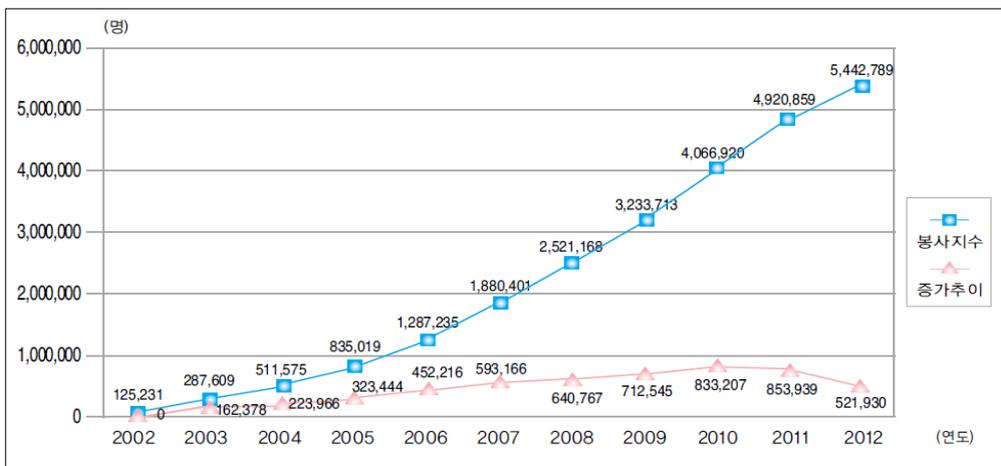
(단위 : 개소)



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3).

〔그림 2〕 연도별 등록자원봉사자 추이(2002~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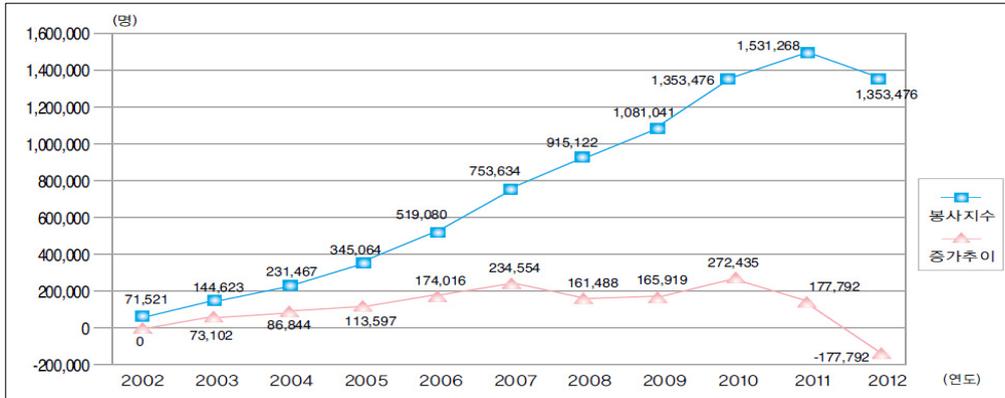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3).

(그림 3) 연도별 활동자원봉사자 추이(2002~2012년)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3).

다.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자원봉사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진흥원 웹사이트)에 소개된 ‘청소년 자원봉사 보유 및 지원 현황’(2003년~2012년 12월 기준)을 보면, 보유 현황으로 청소년 1,556,617명, 지도자 155,684명, 기관(터전) 9,104개소가 입력되어 있으며, 지원 현황으로 봉사활동 참여인원 20,466,550명, 운영 프로그램 960,465건으로 되어 있다. 봉사활동 참여인원의 경우는 10년치 통계이므로 매년 200만 명 정도의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두블(Dovol)이라는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청소년이 접속하면, 봉사활동을 검색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봉사활동이 종료된 뒤에는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봉사활동과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연구자료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3. 자원봉사활동 참가

가.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2011년 결과를 보면, 13세 이상 인구의 자원봉사참여율은 19.8%이다. 말하자면, 13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약 2명이 2011년 한 해에 자원봉사에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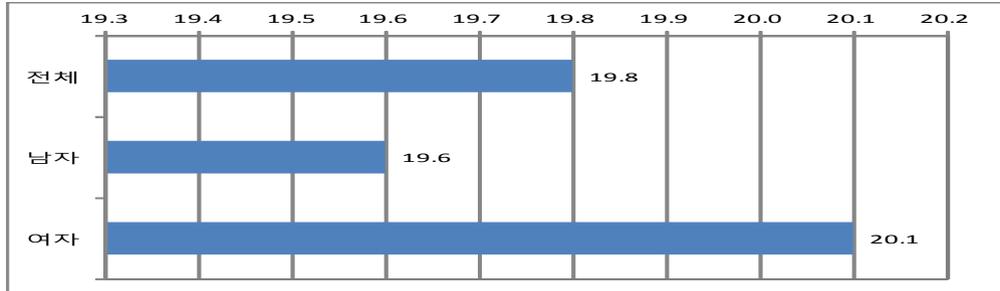
3) <https://www.kywa.or.kr/>

4) <http://dovol.youth.go.kr/dovol/index.do>

여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차이가 크지 않으나 남성보다는 여성의 참여율이 높고, 19세 이하의 청소년 참여율이 두드러진다. 이는 중고교생의 경우에 봉사점수를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적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성별 자원봉사 참여율(2011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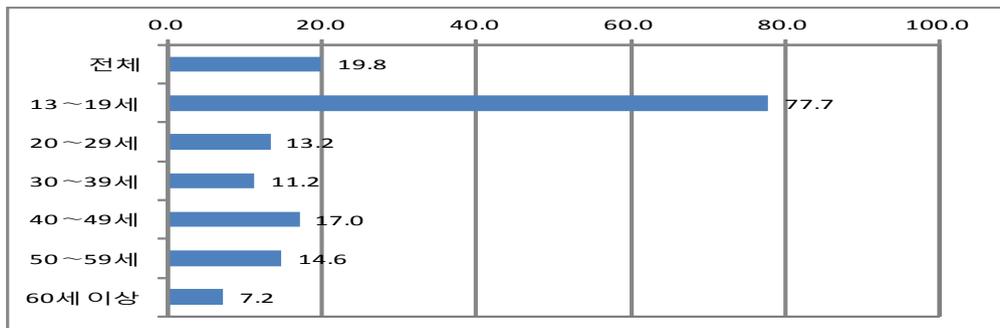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취업자보다는 실업·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율이 높다. 이는 아직 임금근로자를 비롯한 취업자가 장시간 근로를 하고,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⁵⁾ 이로 볼 때, 취업자의 일-생활양립(work-life balance)을 도모하고, 여가시간의 일부를 사회봉사로 전환하여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면서 일자리를 함께 나누는(work-sharing) 사회적 최적화가 필요하다.

[그림 5]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2011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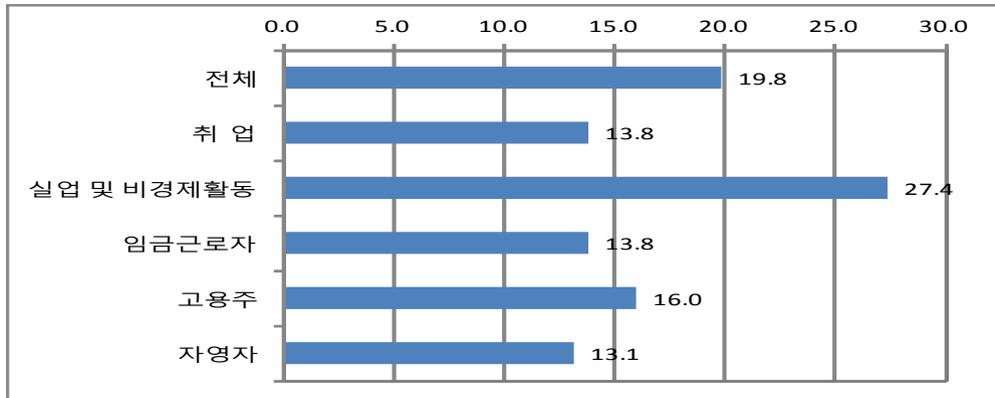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5) 독일을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을 때, 민간자원봉사단체 스태프인 Rainer Hub씨(Diakonie)도 독일의 자원봉사자는 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중심이 되고 있어 근로자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 하였다. 당시 면담주선과 통역 등의 도움을 주신 한미순 박사(베를린기독교대학 강사)께 감사 드린다.

(그림 6) 경제활동상태별 자원봉사 참여율(2011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나.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시간 :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

2009년의 생활시간조사(통계청) 결과를 보면, 자원봉사자는 평균 2시간을 조금 넘게 자원봉사활동에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일 평균으로 10대가 3시간 8분을 자원봉사활동에 쓰고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들은 주로 일요일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봉사활동이 의무사항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이와는 달리 30대와 40대는 각각 1시간 31분, 1시간 54분을 자원봉사활동으로 보내고 있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이들은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봉사에 여가를 활용할 기회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표 6>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시간(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단위 : 시간)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	2:11	2:11	2:13	2:08
10~19세(10대)	3:08	-	2:25	5:11
20~29세(20대)	2:47	2:44	3:16	3:06
30~39세(30대)	1:31	1:27	1:36	2:05
40~49세(40대)	1:54	1:49	2:32	1:51
50~59세(50대)	2:25	2:35	1:57	1:06
60세 이상	2:23	2:23	-	2:24
20세 이상	2:09	2:11	2:10	1:5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다. 전국자원봉사실태조사 결과

볼런티어 21이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자원봉사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1.4%이다. 1999년부터 계속 자원봉사 참여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연령대별 구성에서는 40대가 2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다음이 50대로 22.7%, 20대가 19.9%의 비율을 보인다.

〈표 7〉 1년간 자원봉사 참여율 변동 추이

(단위: 명, %)

	2011		2008		2005		2002		1999	
	빈도	비율								
자원봉사자	321	21.4	398	20.0	331	20.5	247	16.3	215	14.02
비자원봉사자	1,179	78.6	1,591	80.0	1,280	79.5	1,265	83.7	1,318	85.98
전체	1,500	100.0	1,989	100.0	1,611	100.0	1,512	100.0	1,533	100.0

자료: 볼런티어 21(2011).

〈표 8〉 성별 전체 응답자 중 1년간 자원봉사자 비율(2011년)

(단위: 명, %)

	남자		여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대	31	19.7	33	20.1	64	19.9
30대	22	14.0	28	17.0	50	15.6
40대	38	24.2	39	23.8	77	24.0
50대	38	24.2	35	21.3	73	22.7
60대	28	17.8	29	17.7	57	17.6
전체	157	100.0	164	100.0	321	100.0

자료: 볼런티어 21(2011).

Ⅲ. 자원봉사자의 재해

1.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

여기에서는 먼저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인 자발적 의사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재해발생통계가 공표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 사례도 그다지 소개되고 있지 않다. 포털

사이트에 ‘자원봉사’, ‘사고’, ‘재해’ 등의 연관 검색어를 입력해 보면, 인하대생 사고 관련 기사⁶⁾와 교통 자원봉사 사고⁷⁾ 등 몇 가지 자원봉사자 관련 사고에 대한 기사가 확인되는 정도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대구자원봉사정보센터’라는 웹 사이트⁸⁾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제도를 안내하면서 보상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⁹⁾ 이 정보를 통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사고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 통계를 참조하면, 매년 30~40건의 사고가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40만 명 수준임을 감안한다면(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2013), 등록자원봉사자 수 기준으로 볼 때, 1만 명 가운데 약 1명 정도의 재해발생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말하자면 0.01% 정도의 재해율을 보인다.

사고 유형도 다양하여 골절, 베임, 끼임, 화상, 교통사고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반찬조리를 돕다가 손가락을 베거나 끓는 물에 화상을 입는 사고, 이동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봉사활동 수혜자의 폭력(손가락 물기, 물체

〈표 9〉 대구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신청·지급건수(2004~2012년)

(단위: 건)

	신청건수	지급건수
2004	2	2
2005	6	6
2006	15	13
2007	30	28
2008	48	47
2009	43	42
2010	49	49
2011	37	37
2012	37	37

주: 대구자원봉사정보센터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참조하면서 필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 신청·지급건수와 약간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구자원봉사정보센터 웹사이트.

- 6) 이 사고는 방학을 맞아 춘천 상천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간 인하대학교 아이디어뱅크 동아리 학생 13명이 2011년 7월 27일 산사태로 펜션에서 잠을 자다 참변을 당한 것을 말한다.
- 7) 출근길 교통 자원봉사를 하던 모범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기사이다.
- 8) http://dgvolunteer.co.kr/programs/user/insurance/saleInfo_04.asp
- 9) 이러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혹시 이 글에서 인용하였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가 웹사이트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관련 산하기관에서도 관련 통계와 정보를 제공하였으면 한다.

〈표 10〉 자원봉사자 사고 사례(대구광역시)

발생연월	사고 내용
2012. 4.	보호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쌀 10kg과 라면 1박스를 전달하고 내려오던 중 우측무릎 인대에 상해를 입음
2012. 3.	○○복지재단 무료급식 봉사활동 당시 끓는 물에 소독 중이던 식기를 고무장갑을 끼고 건지다가 고무장갑이 찢어져 우측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음
2012. 2.	관내 3층 실버식당에서 식사 보조 봉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어 이동 중 발을 헛디더 넘어져 왼쪽 손목이 골절됨
2012. 2.	무료급식봉사 활동 중 무거운 밥, 국통 등을 들고 배식을 하다 손목이 꺾이면서 통증을 느낌
2012. 2.	장애인 정보화재택방문교육을 위해 대상자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나오다가 길 빙판에 미끄러져 왼쪽 어깨를 다침
2011. 6.	농아장애아동 목욕 중 아동이 넘어지면서 아동을 받쳐주다가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손상됨
2011. 4.	목욕봉사 중 발을 헛디더 발목 인대가 늘어남
2010. 8.	재난재해 침수지역 복구봉사활동 중 슈퍼마켓의 피해물품을 정리하면서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정리를 하던 중에 상대방 봉사자가 물병 1.5리터짜리를 발등에 떨어뜨려서 부상을 입게 됨
2010. 5.	장애인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봉사활동 중 자폐성 장애2급 장애인에게 엄지손가락을 물림
2010. 5.	독거 어르신집 다락방 수리 중 다락방 출입계단이 너무 급경사라 미끄러져서 팔꿈치를 다침
2010. 4.	노숙인무료급식 봉사활동 중 노숙인이 던진 그릇에 맞아 머리 부분 상해를 입음
2010. 2.	복지관 반찬 조리를 하러 가던 중 골목길에서 좌회전 시 자동차 추돌사고로 상해를 입음
2009. 9.	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자원봉사활동 중 자원봉사 수혜자에게 팔을 뒤로 꺾이면서 상해를 입음.
2009. 7.	관내 독거 어르신 반찬 배달 봉사활동 중 개에게 발목부위를 물리면서 복숭아뼈에 상해를 입음

자료 : 대구자원봉사정보센터 웹사이트.

를 던짐)에 따른 사고,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 다른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 목욕봉사를 하다가 수혜자를 돕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신체 부상 등이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는 최소의 금액이 8,100원이었다. 이 보상은 사례에서 소개한 경우로 재난재해 침수지역 복구봉사활동을 하는 가운데 슈퍼마켓의 피해물품을 정리하면서 다른 봉사자가 1.5리터짜리 생수병을 발등에 떨어뜨려서 부상을 입게 된 경우였다. 아마 치료비에 대한 보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대 보상액은 8천만 원으로 마을행사를 준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였다. 아마 이 경우는 유족급여인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있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6건은 불인정 이유가 다음과 같았다. 먼저 1건은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는데 자원봉사활동을 마치고 회식을 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였다.¹⁰⁾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1건 더 있었다.¹¹⁾

10) 산재보험의 경우는 회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재해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다른 1건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상해보험에 질병에 대한 보장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1건은 보상 신청이 지연되어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였다.

2.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다가 일어난 재해¹²⁾

가. 자원봉사기관의 유급근로자

근로복지공단의 협조를 얻어 근로자가 회사 업무의 연장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확인하였다. 만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유급근로자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상 사고·질병으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자원봉사관련기관 유급근로자의 산재발생 사례

발생연월	사고 내용
2009. 10.	2009년 10월 23일 13:20경 ○○구 자원봉사지원단에서 탁자와 의자를 옮기던 중 침에 맞은 듯 따끔하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사고가 발생함
2010. 2	조리실에서 자원봉사자와 무료반찬을 조리하여 포장한 후, 11시부터 무료반찬 배달을 하던 중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무릎통증이 발생
2010. 4	△△주부모임자원봉사단체에서 식자재를 정리하던 중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녹골이 부러지는 부상
2010. 10.	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700명 책임자로 참석하여 점심도시락 박스(30kg 상당)를 배부하고, 휠체어를 실은 장애인을 도와주다가 어깨부분이 파열
2010. 11.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차량에서 목욕을 돕기 위해 할머니를 태우고 승강기를 작동하던 중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차량 뒷문이 닫히면서 왼손이 끼인 상태로 30분 정도 압축된 상태로 있었음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데이터베이스.

이는 대구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생하였던 자원봉사자 사고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물건을 옮기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는 사고, 손가락이 끼어 골절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산재로 인정이 되어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장해로 인정된 경우에는 장해일시금도 지급되었다.

11) 신청자가 길을 가다가 현수막이 떨어져 이를 다시 달아주는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12) 연구에 참고할 만한 재해사례를 알려주신 근로복지공단의 김근태 차장님과 김관석 차장님께 감사드린다.

나. 일반근로자의 자원봉사활동 : 행사 중 사고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경우를 알아보기로 하자. 바로 자원봉사활동이 회사 업무의 연장인 경우이다. 두 사례가 확인이 되었다. 이 두 재해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¹³⁾에 따라 ‘행사 중 사고’인 경우이다.

〈표 12〉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중의 근로자 산재발생사례

발생연월	사고 내용
2011. 5.	모 공공기관의 자원봉사 일정으로 ○○모자원에서 봉사활동 중 원생들과 축구경기에서 흘러나온 공을 돌려주기 위해 차는 순간 우측 발목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짐
2012. 10.	모 건축사사무소에서 단체로 자원봉사를 왔다가 나무를 켜기 위해 선반톱을 사용하던 중 장갑이 톱날에 끼어들어가면서 가운데 손가락 및 손바닥을 다침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데이터베이스.

먼저 2011년 5월에 발생한 사고로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로 ○○모자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때 원생과 직원이 어울려 축구경기를 하던 중에 흘러나온 공을 돌려주기 위해 해당 근로자가 공을 차는 순간 우측 발목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면서 오른쪽 발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따라 입원 28일을 포함한 총 요양기간 124 일간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로서 모 건축사사무소에서 단체로 자원봉사를 갔다가 일어난 사고이다. 해당 근로자가 나무를 켜기 위해 선반톱을 사용하던 중에 장갑이 톱날에 끼어들어가면서 가운데 손가락과 손바닥을 다쳐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고로 해당 근로자는 입원 107일을 포함하여 226일간 요양하였으며, 장해등급 12급 12호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근로자는 산재로 인정되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

13)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IV. 자원봉사자의 재해에 대한 보호 : 상해보험 적용

1.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적용

정부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08년 2월 29일에 시행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8852호)에 의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인이 자원봉사단체를 방문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교육을 수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nanum/prtl/web/vols/volsMain.do>)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게 된다.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하게 되면,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13)를 보면, 2008~2012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예산 추이가 소개되어 있다. 2008년에 3,206백만 원이었던 예산이 2012년에는 5,994백만 원으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률도 1:1에 가깝다. 2011년의 경우는 정확히 1:1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13〉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예산 추이(2008~2012년)

(단위: 백만 원)

	전체	국비	지방비
2008	3,206	1,554	1,652
2009	3,562	1,675	1,887
2010	3,729	1,676	2,053
2011	7,740	3,870	3,870
2012	5,994 ¹⁾	3,102	2,892

주: 1) 기존 자료에는 6,084백만 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필자가 이를 수정하였음.
자료: 안전행정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13).

2012년의 경우에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원봉사자 수는 3,502,674명이었다. 등록인원이 8,216,176명이었으므로 등록인원의 42.6%가 자원봉사의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실인원은 2,163,174명이므로 보험가입 인원,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의향이 있었던 등록인원의 61.8%가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 1인당 평균보험료는 1,523원으로 저렴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상해보험을 수령한 자원봉사자 수는 611명으로 실인원의 0.03%이다.

〈표 14〉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현황(2012년)

(단위: 명, 원)

	등록인원	자원봉사활동 실인원	보험가입 인원	1인당 평균보험료	보험금 수령인원
전체	8,216,176	2,163,174	3,502,674	1,523	611
서울	1,536,867	344,001	305,553	2,542	74
부산	641,761	171,974	419,357	839	129
대구	427,607	110,123	131,100	600	47
인천	464,142	104,204	215,854	1,174	31
광주	325,929	70,620	80,963	1,863	10
대전	255,836	71,016	68,563	1,901	16
울산	176,098	59,317	79,185	1,483	10
세종	13,592	4,239	9,659	1,325	1
경기	1,842,021	417,646	594,704	1,717	151
강원	268,329	76,419	147,806	2,010	27
충북	224,265	68,910	318,328	1,499	18
충남	289,384	75,889	174,917	1,599	15
전북	314,291	82,352	171,456	1,646	14
전남	297,955	130,869	217,236	1,512	5
경북	440,915	176,490	308,948	1,124	24
경남	615,692	154,263	197,544	1,841	29
제주	81,492	44,842	61,501	1,216	10

자료: 안전행정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13).

2. 사회복지 우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별도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명칭은 ‘사회복지 우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다. 이 보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¹⁴⁾ 협의회의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2013년의 경우에 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입찰을 공고하였다.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담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상해보험이 보장하는 담보 내용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상해입원(1일당), 배상책

14) 『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13.1.27]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임, 구내치료비, 영업배상책임, 화상진단 위로금, 골절진단 위로금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 사회복지협의회는 예산을 250백만 원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상해보험은 예산의 제약으로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봉사실적이 높은 자원봉사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¹⁵⁾

〈표 15〉 사회복지 우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대상·사업예산(2011~2013년)

(단위: 천 명, 천 원)

	가입대상	사업예산
2011	180	162,540
2012	190	248,900
2013	200	250,000

주: 가입기간은 매년 5월 중순부터 다음해 5월 중순까지임.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

〈표 16〉 사회복지 우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2013년) 담보조건(입찰공고문)

(단위: 천 원)

담 보 내 용	보 장 금 액	비 고
상 해 사 망	50,000	자원봉사 활동 중 상해사고로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가입 금액(보장금액) 전액 지급
상해후유장애	50,000	자원봉사 활동 중 상해사고로 인해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보장금액에 따라 지급
상해입원(1일당)	30 (※ 180일한도)	상해사고로 입원을 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한 입원일당을 보장금액에 따라 지급
배상책임	10,000	피보험자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 발생할 경우 보장 금액에 따라 지급
구내치료비	10,000	자원봉사 활동 중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지급
영업배상책임	100,000	전국 관리센터 등 유관기관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상
화상진단 위로금	300	-
골절진단 위로금	300	-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

3.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재학 중인 청소년은 봉사활동점수를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제도로 교내·외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의무’적이라는 이유로 이

15) 직접 면담을 하면서 사회복지 우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 최영협 차장님(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본부 자원봉사부)께 감사드립니다.

들의 활동은 사회에서 순수한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일부 청소년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소극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다른 일반자원봉사자의 질시를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봉사실적증명서를 부정으로 발급받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결코 0이거나 마이너스인 것은 아니다. 이들이 어떠한 의도로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먼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은 안전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학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3. 23)에 따른 것이다.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교내에서 이루어진 자원봉사활동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간주되어 학교안전공제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급여로는 요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교외에서 일어나는 자원봉사활동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청소년이 소속된 자원봉사기관이나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제도를 운영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해보험 가입 대상에서 청소년을 제외한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기관이 있다. 어떤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기관은 일정한 봉사실적이 있는 청소년은 가입을 시켜주기도 한다. 따라서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V. 자원봉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1. 안전교육을 통한 사전적 예방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교육훈련)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수시로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안전체험

센터에서는 생활안전·재난안전 교육과정이 자원봉사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자원봉사 센터별로 소방안전교육체험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전교육은 ‘체험’의 수준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대책으로서 첫째, 위험도가 높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야 하고, 해당 안전교육을 수강한 자원봉사자만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중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예방활동과 안전교육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을 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자원봉사자 대상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의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단이 상시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체계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안전관리자의 양성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동영상도 1365자원봉사포털과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여러 웹사이트에 올려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후적 대책

가. 일반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적용 확대

이미 살펴보았듯이 자원봉사센터에 따라 상해보험 적용대상이 상이하다. 연간봉사활동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선정하거나 1회 이상의 봉사실적이 적용기준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는 예산의 제약, 보험단가, 자원봉사자 수의 변동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뜻으로 찾아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다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한 자원봉사자에게 실적, 예산 등의 이유로 상해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두 자원봉사자가 있을 때, 한 명에게는 상해보험의 혜택을 주고, 다른 한 명에게는 자격을 내세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가 무상으로 개인의 가치를 얻게 된다. 이 무상의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상해보험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고 볼 때, 동일한 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봉사자에게 보호망의 혜택을 달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시간, 참여횟수와 관계없이 자원봉사영역에 들어온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영역에서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사회는 이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현재와 같이 자원봉사센터나 보건복지부 인증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정한 자원봉사자에게만 상해보험 혜택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이들 자원봉사영역에 들어와 활동을 하는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 혜택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청소년 대상의 상해보험 적용

청소년 대상의 상해보험 적용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위에서 제안한 내용으로서 일반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을 모두 적용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일반자원봉사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대안으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범위를 교외에서 일어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항에 규정된 “교육활동”은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미리 자원봉사활동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교육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다. 근로자의 일반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회사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근로자가 활동과정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산재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설명하였다. 문제는 회사와 상관없이 근로자 개인이 주말이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이 회사의 업무가 아니며, 사업주가 지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자원봉사관련의 상해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치료비와 입원비가 지원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며, 사망한 경우

에는 유족에게 일종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요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소득이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어 피재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근로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축시키는 주요한 배경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다.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자원봉사활동을 보호한다면, 근로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제고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인적 자본을 사회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KLI**

<참고문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데이터베이스.

김상호(2013),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방식과 시사점 :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0(3), 한국사회정책학회, pp.171~195.

김진학(2012),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과제 - 기초자치단체 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98, 한국도시연구소, pp.9~22.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2013), 자원봉사 홍보용 소개자료.

대구자원봉사정보센터 웹사이트(<http://dgvolunteer.co.kr/programs/user/insurance/saleInfo04.asp>).

박찬임 · 이정우 · 원종학(2003), 『주요국의 산재보험 적용 · 징수 체계』, 한국노동연구원.

박현정 · 홍현정(2011), 『자원봉사(Volunteer Work) 측정방법 연구』, 『2011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3), 『2012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볼런티어 21(2011), 『2011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 조사연구(1999~2011 자원봉사 및 기부실태 비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사이트(<http://volunteer.seoul.go.kr/citynet/jsp/vol/VolCmmCenterInfo.do>).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사이트(<http://www.anyang1365.or.kr/vol/gov/mogaha/ntis/web/vol/vcm/action/VolVcmBbsPortalAction.do>).

안전행정부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13), 『2013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오정은 · 양재성(2009), 『무급가족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타당성 연구』,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청소년자원봉사포털사이트(<http://dovol.youth.go.kr/dovol/index.do>).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웹사이트(<http://knsw.bokji.net/kncc/m00/m00.jsp>).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웹사이트(<http://www.1365.go.kr/nanum/prtl/web/vols/volsMain.do?NaviMenuSe=img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ywa.or.kr/>).

go2 웹사이트(<https://www.go2hr.ca/articles/are-volunteers-covered-under-workers-compensation-act>).

New South Wales Workcover 웹사이트(<http://www.workcover.nsw.gov.au/>).

OECD(2009), OECD Factbook.

Queensland Workcover 웹사이트(<http://www.workcoverqld.com.au/>).

Workforce Legal 웹사이트(<http://workforcelegal.com.au/pages/faq-main-what-is-workcover.html>).